

디체인지(D'Change) 개요 및 목적

디라이트는 디체인지 사업을 통해 공익/인권 단체 중 자신들의 활동 분야와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에도 예산과 법적 조력의 한계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예산, 법률 및 네트워크 등 전반적인 지원을 하여 해당 공익/인권 분야의 법/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비영리 공익인권 단체
- 소셜벤처/스타트업 유관 단체
- 미등록 임의단체
- 각 단체들의 협의체 (컨소시엄 등)
- 총 3 단체를 선발하여 지원 예정

지원내용

1. 예산지원 (단체 당 500 ~ 1,000 만원 범위 내)

구분	지원 내역	비고
사업비	자료조사비, 현장조사비, 연구비, 토론회 개최 관련 비용, 인쇄비, 회의비, 대시민 캠페인 비용 등	총합이 예산지원 범위 내여야 함
인건비	실무자 인건비 (전체 사업 경비의 1/3 이하)	
기타 사업 운영비	자재, 비품 구입비, 교통비 등 직접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업 운영비	

2. 법률지원

법무법인 디라이트 소속 변호사의 연구, 법률 개정 작업 지원

3. 네트워크 지원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자문 및 협력사를 통한 네트워크 연계 지원

사업기간

2023.07.01 – 12.29 (총 6개월)

사업기간 내에 개선할 법령안 등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제출한 법령안 등의 시행을 위한 장기적인 활동은 사업기간에서 제외

선발기준 및 절차

<선발기준>

사업의 필요성 및 사회기여 효과, 사업 목표의 명확성, 재정 지원의 시급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기존에 비슷한 유형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단체를 선발

심사방법

- (1) 서류접수
- (2) 서면심사
- (3) 결과발표

지원 방법 및 일정

<지원 방법>

- 디라이트 홈페이지 (<https://dlightlaw.com/social-impact/public-services/d-change/>)에서 "D'Change 지원서 양식 신청하기"을 클릭한 후 작성하기
- 지원서 작성시, 담당자가 이메일로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서약서를 보내 드립니다.

<지원 문의>

- E-mail: campaign@dlightlaw.com
- Phone: 02-2051-1870

디체인지 사업 일정

날짜	내용	비고
05.01 - 06.07	서류접수	
06.08 - 06.11	서면심사	
06.12	선정단체 발표	개별 통보
06.13 - 06.23 (잠정)	협약식	정확한 날짜 및 장소는 추후 재통보 예정
06.26 - 6.28 (잠정)	1차 활동 예산 지원	단체들이 신청한 예산의 70% 지원

07.01 - 12.28	지원단체 사업 활동 기간	중간 보고서 디라이트에 제출 (10월초), 중간보고서 검토후 2차 활동 예산(30%) 지원
12.29	사업종료	사업 보고서 디라이트에 제출, 발의된 법 률안 시행을 위한 협력 및 소통

(상기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적일 수 있음)

디체인지: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지원사업 FAQ

<디체인지 사업 관련>

Q. 디라이트가 디체인지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공익은 디라이트의 문화이자 목표입니다. 디라이트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성장과 혁신을 리드하는 방법으로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로펌이야말로 사회의 법/제도를 혁신하고 변화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조직입니다.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가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것을 소명으로 삼고 있으며, 관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라이트는 공익 기관을 포함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명망 있는 기업 및 조직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에 디라이트는 사명감을 가지고 혁신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법과 제도의 미비 때문에 활동에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나서서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Q. 지원대상인 단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 공익인권 단체, 소셜벤처/스타트업 유관 단체, 미등록 임의단체, 각 단체들의 협의체 (컨소시엄) 등 공익을 지향한다면 그 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Q. 공익 분야에 제한이 있나요?

공익에 기여하는 활동이라면 분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디라이트는 장애, 아동청소년, 여성, 이주민의 인권 등 전통적인 공익 인권 분야 외에 청년, 사회적경제, 환경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 종교, 인종 등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의 필요성 및 사회기여 효과, 사업 목표의 명확성, 재정 지원의 시급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기존에 비슷한 유형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단체를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신청서 접수 관련>

Q. 약식 기재는 어느 수준으로 하면 되나요?

양식 기재는 주어진 페이지를 넘기지 않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페이지를 넘어 기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신청서 안의 내용 역시 관련 법조문을 일일이 나열하거나,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체가 지향하는 방향과 원하는 것을 디라이트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Q. 제출 서류중 ‘단체의 재정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최근 1년 내의 예/결산 관련 서류’란 정확히 무엇을 포함하나요?

단체에 재무제표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없는 경우 단체의 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설명서(자유양식)와 단체명의 예금 계좌에 관한 잔고증명서 등을 포함합니다.

Q. 지원하는 단체의 예/결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지원 단체를 선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인 ‘재정 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즉, 재정이 취약한 단체를 우선하여 선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원 관련 사항>

Q. 디라이트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의미와 사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재정 규모가 취약한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므로 이러한 단체들이 자신들의 공익 활동과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선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 및 네트워크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함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산의 사용 범위는 유연하게 판단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진행하는 활동가의 인건비가 필수적이라 봐 지원하는 전체 예산의 1/3을 인건비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조사, 현장조사, 캠페인 등 사업과 관련한 제반 활동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한 행정적인 업무 처리로 인해 막상 사업 그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게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디라이트가 계획안에서 예산지원 기준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임의적입니다. 단체에서는 예산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사후에 결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법률 지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각 단체당 전담으로 디라이트 소속 변호사 1-2명이 협력할 예정입니다. 각 변호사가 단체와 미팅 및 상담은 물론, 연구활동을 함께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관련 분야의 법령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Q. 네트워크 지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캠페인 등의 활동이 필요하거나, 기존에 비슷한 사업을 훌륭히 해낸 단체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받거나 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디라이트가 가진 네트워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디라이트는 단체들의 사업 완성을 위해 개선할 법제도와 관련한 학자, 연구기관 등 향후 법령안을 제출할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노

력할 것입니다.

Q. 사업의 종료, 사업의 완성이란 어떤 뜻인가요?

사업기간 내에 디라이트가 지원하기로 한 예산을 전부 지원하고, 법령안 등을 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사업기간에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법령안 제출만으로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것이 아닌 이상 지원단체의 사업을 통해 마련한 법령안이 국회나 정부를 통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후에도 선정 단체와 계속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법령안의 시행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Q. 신청안내 및 서약서 상의 ‘사업기간 내에 선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계획서상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란 무엇을 뜻하나요?

선정단체에서 법제도 개선에 관한 활동을 전혀 진행하지 않는 경우, 디라이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팅이나 연구, 조사 등에 소극적이거나 일정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등 선정단체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6개월 내에 법령안 마련이 불가능한 경우를 뜻합니다.